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9
----------	-------

제출년월일 : 2024.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명시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2024.12.31.)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규정 개정(안 제2조의2)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4. 4. 18. ~ 5. 8.(제출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지방자치법」 제159조</u>----- ----- ----- ----- ----- -----.</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u>조례</u>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9년 12월 31일</u>----- -----. ----- ----- <u>이 조</u> <u>례</u>----- -----.</p>
<p>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한다</u>.</p> <p>1. ~ 5. (생략)</p> <p>④·⑤ (생략)</p>	<p>제8조(심의회 구성) ① ----- ----- ----- <u>15명</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위</u> <u>촉</u>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김가영
연 락 처	02-3153-9782